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9월 20일
전문위원 권 오 숙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2년 8월 26일

나. 발 의 자: 김민석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2년 9월 5일

라. 상정일자: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 9. 20.)

2. 제안설명 요지

□ 제안이유

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소관사무 및 지휘·감독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에서 조례에 위임한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(안 제4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
- 입법예고(2022. 8. 30.~ 9. 5.) 결과: 의견 없음

4.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권오숙)

가. 개정취지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정책지원관 조항 신설(안 제4조의2)
 - 제1항: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에 따라 강서구의회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두고
 - 제2항: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조례 제정·개정·폐지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,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,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의 취합·분석 지원,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,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의 각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2022. 1. 13. 전부개정 된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이는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에 따라 그 직무를 세분화 하였으며, 그 내용 또한 행정안전부의 정책 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□ 지방자치법
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